

근로기준법의 저편에

이 승 렬*

1953년이라면, 한국전쟁 휴전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바로 그해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라는 이른바 노동3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세쌍둥이의 만형 격으로 탄생하였던 ‘근로기준법’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제정된 지 17년이 흐른 1970년 11월 13일이다. 당시 청계천 인근 평화시장에서 미싱 보조사로 일하던 진태일이라는 청년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것이다.

이처럼 한 청년에게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하였던 ‘근로기준법’은 제1조(목적)에서 명문화하고 있듯이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도록 노동정책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경제성장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되기 위하여 시골의 젊은이들이 상경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에는 모자라다고 해야 할 “근로조건”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시절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근로기준법’이 노사 양쪽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야말로 근로자의 땀과 눈물과 피가 배인 ‘근로기준법’은 이제 56세의 나이가 되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해에 태어난 세대는 “오륙도” 신세로 적지 않은 이가 이미 현직에서 은퇴하였을 것이다. ‘근로기준법’도 이처럼 명예퇴직자 명단에 오를 일은 없겠지만, ‘근로기준법’의 주름(?)을 찌르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두고, 떠들썩한 가운데 어찌 보면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2005년 5월 31일의 일이다. 지금은 꽤 잊은 듯하지만, 그날은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13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던 날이다. 이날 ‘근로기준법’을 수호하는 노동부가 주목할 만한 선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 선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eesy@kli.re.kr).

이란 “노동부는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중소기업특별위원회, 「영세자영업자 대책 보도자료」, 2005. 5. 31).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2006년 1월부터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 한 가지 사건이라면, 2008년 7월 1일의 일이다. 레미콘차량운전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시행 4개월 만에 대상자의 8할이 넘는 적용예외신청이 접수되어 실제의 가치가 희석된 아쉬움은 있으나 ‘근로자’라 하기도 ‘자영업자’라 하기도 마땅치 않은 ‘특수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보호망을 열어준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사정은 어떠한가. 2009년 2월 23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 내용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패키지 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영세자영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실업급여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담당부처인 노동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제도 수립에 땀을 흘리고 있다. 2005년의 노동부 선언이 4년 지난 시점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영업자 대상의 실업급여제도가 올해 마련된다면, 2009년은 ‘취업자’가 명실상부하게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 되는 해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덤프트럭 기사, 화물트럭 기사,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 이들에게 최근 정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심지어 문화예술이나 스포츠분야 등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실제로는 ‘갑(甲)’이라는 계약상대자에게 찢절매며 일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에 고유한 현상도 아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장화로 불리는 이탈리아에서도 이들의 출현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의 저편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품어 안는 노동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들도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데도 이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에게 주목하여 이들의 본디 모습을 밝혀내려는 연구자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KLI**